

Legislative & Policy Weekly

세종Law *Focus*

주간 입법·정책 동향

Vol.257 | 2024.10.21 (2024.10.14~10.20)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2. 입법(행정)예고 법안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1. 국정감사 일정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10.14~10.20)

Contact: 백대용 변호사(파트너)

02-316-4630, 010-3248-5382
dybaek@shinkim.com

Summary

【정부의 주요 정책】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4차 전파진흥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전파의 확장과 활용을 극대화하여 디지털 혁신 선도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으로서 ‘전파로 확장하는 디지털 번영 대한민국’이라는 이상 하에 4대 전략과 주요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AI + R&DI(기술혁신) 추진전략」과 「산업데이터 활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대책은 지난 9월 국가인공지능위원회에서 발표된 산업 인공지능 전환 확산 방안의 후속 조치이자, 지난 5월 「AI시대의 신산업 정책」 위원회를 출범하면서 추진하기로 한 6대 분야별 AI 활용전략 중 세 번째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달부터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을 정부가 직접 인증하는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배터리 인증제는 전기차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기차에 장착되는 배터리의 안전성을 정부가 사전에 직접 시험하여 인증하는 제도로써, 「자동차관리법」 개정(’23.8월)에 따라 ’25년 2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특허청>은 「글로벌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유출 대응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방안은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의 기술유출 증가로 국가적 피해가 우려되는 국면을 극복하고,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활로를 가로막고 있는 기술탈취를 방지하는 국가 기술보호 체계를 확립하여 글로벌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역동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입법(행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유료방송사업자의 채널 운용 자율성을 높이고 디지털 방송 환경에 맞는 방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운용해야 하는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의 단위 수에 관한 규제를 개선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 글로벌 경쟁 심화로 성장정체 등 위기를 겪고 있는 국내 유료방송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자유로운 투자와 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방송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는 부동산투자회사 시장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발표한 ‘리츠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부동산투자회사의 투자대상을 확대하고, 부동산투자회사 및 자산관리회사의 보고·공시사항을 간소화하는 등 부동산투자회사 시장 발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법에서 위임된 식품 등을 제조·가공하는 과정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식품 등에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섞일 우려가 있는 경우 영업자에게는 오염 예방조치를 하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대상을 구체화하는 등의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인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의 세부 종류와 범위를 명확히 하고, 영업자가 가입할 수 있는 책임보험의 종류와 한도를 규정하여 영업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등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법률 발의 및 제출안】

이사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그에 따라 직무 수행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새로이 규정하는 등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등 11인)」** ,

‘가맹금’을 가맹금을 포함하여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가맹사업거래를 통해 가맹본부에게 귀속되는 ‘경제적 이익’으로 변경하는 등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24인)」** ,

사업용 자산에 대한 투자를 공제 대상 투자로 포함하고, 공제율을 100분의 5(중견기업은 100분의 7, 중소기업은 100분의 10)로 상향 및 일몰기한을 2033년 12월 31일까지 7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의원 등 10인)」** ,

기업의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연장하되,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는 2024년 수출 및 기업실적 개선을 감안하여 투자여력이 제한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공제율을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3인)」** ,

상속 및 증여 시 최대주주의 주식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20%를 할증 평가하여 과세하는 현행 제도를 폐지하고,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업종을 모든 업종으로 인정하되 적용 제외 업종만 별도로 규정하는 현행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2인)」** ,

항공운송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항공기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한과 자산총액 일정 이상의 재산세 경감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1인)」** ,

국가핵심기술 및 산업기술 국외유출 범죄 처벌을 강화하고, 국가핵심기술 및 첨단기술 보유 기관 근무자의 외국기업 취업을 제한하며, 산업기술침해행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등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2인)」** ,

재해 예방활동의 인정을 받았으나 사실상 형식적인 재해 예방활동을 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 이미 감면된 산재보험료를 재산정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의원 등 12인)」** ,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를 기간 내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입력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는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0인)」** ,

산재된 생태계-기후변화 정보를 일원화하기 위해 범부처 차원의 생태계 기후대응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수립하는 데 지원하기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등 13인)」** ,

「근로기준법」을 모든 사업장과 사업에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일부 규정을 단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법 준수에 필요한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4인)」** ,

균등한 처우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동일 가치 노동의 판단 기준과 정의를 근로기준법에 명확히 규정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5인)」** ,

채용과정에서 일자리의 근로조건을 공개하도록 하여 구직자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채용 절차상 공정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0인)」** ,

의류 재고품의 폐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여 의류 기업이 재고품을 기부하거나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의류를 제품 등 순환이용 촉진 대상 품목에 추가하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4인)」**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 자동차에 칸막이벽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도록 하고, 칸막이벽시설을 설치·개선하는 경우 재정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의원 등 10인)」** ,

2019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특정건축물 중 인근 주민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고 안전상 문제가 없는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특정건축물에 대해 한시적으로 합법적으로 허가 및 신고, 사용승인 및 용도변경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다시 부여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박홍근의원 등 10인)」** 등이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국회의사일정(안)】

각 상임위원회 별로 **2024년도 국정감사**가 계속됩니다. 10/21 9개 상임위, 10/22 11개 상임위, 10/23 3개 상임위, 10/24 12개 상임위, 10/25 7개 상임위의 국정감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목 차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바로가기](#)

- 「제4차 전파진흥기본계획」 발표(과학기술정보통신부) 8
- 「AI+R&D(기술혁신) 추진전략」 및 「산업데이터 활용 활성화 방안」 발표(산업통상자원부) 9
- 「배터리 안정성 인증제 시범사업」 실시(국토교통부) 11
- 「글로벌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유출 대응방안」 발표(특허청) 12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바로가기](#)

-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14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산업통상자원부) 14
-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보건복지부) 14
-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보건복지부) 15
-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환경부) 15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 15
-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 16
-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 16

2. 입법(행정)예고 법안

[바로가기](#)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학기술정보통신부) 18
-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학기술정보통신부) 18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문화체육관광부) 19
-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 19
-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국토교통부) 20
-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식품의약품안전처) 21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식품의약품안전처) 21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바로가기](#)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근혜의원 등 11인) 23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의원 등 12인) 23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24인) 24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4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5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의원 등 10인)	25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4인)	26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3인)	26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의원 등 12인)	26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2인)	26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2인)	27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등 10인)	28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0인)	29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6인)	29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6인)	30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의원 등 15인)	30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30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1인)	31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의원 등 12인)	31
•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의원 등 15인)	32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3인)	32
• 향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33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33
•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33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의원 등 12인)	34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2인)	34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의원 등 10인)	35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의원 등 12인)	35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0인)	36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0인)	36
•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등 13인)	37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4인)	37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5인)	38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38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38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0인)	39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4인)	39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4인)	40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4인)	40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1인)	41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9인)	41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7인)	41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의원 등 10인)	42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박홍근의원 등 10인)	42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바로가기](#)

1. 국정감사 일정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바로가기](#)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256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10.14~10.20) [바로가기](#)

- [소비재·유통업] 소비자·유통업 뉴스레터 2024_Vol.2
- [금융] 보험금청구권 신탁이 곧 허용됩니다
- [중국] 문이 열려도 문턱은 살피야 한다
- [금융] 은행 및 금융지주 금융규제 주간 브리핑 - Vol.6 (2024년 10월 3째주)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4차 전파진흥기본계획」 발표 -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중장기 전파정책 청사진 발표 - 전파한계극복 5대 분야 및 10대 중점기술을 선정·육성 - 전파의 공익적 활용을 위한 디지털 물결(Wave) 사업 추진	2024-10-16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제4차 전파진흥기본계획」을 발표했음. 「전파진흥기본계획」은 전파법을 근거로 하는 법정계획으로서 '23년 5월부터 산·학·연 전문가 등이 60여 차례의 회의를 거쳐 다양한 과제를 발굴했으며, 전파정책자문회의, 기업·연구·학계 등 외부검토(3회), 공청회, 과학기술 유관단체 대상 메일 보내기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다고 밝힘

전파는 데이터의 생성·전송·처리·활용 등의 과정에 반드시 필요한 디지털 핵심자원으로서 디지털 혁신을 통해 다양한 무선 기반 디지털 서비스가 등장함에 따라 디지털 사회에서의 역할과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음. 다만, 지하·수중 등에서의 원활한 이용 제한, 금속 통과 어려움, 정보전송 기능 외에 다양하게 이용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하며, 이러한 공간·물리·기능적 한계 극복을 통해 디지털 혁신범위가 크게 확대될 수 있음

이번에 발표한 「제4차 전파진흥기본계획」은 전파의 확장과 활용을 극대화하여 디지털 혁신 선도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으로서 '전파로 확장하는 디지털 변영 대한민국'이라는 이상 하에 4대 전략과 주요 목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음

<「제4차 전파진흥기본계획」의 비전 및 목표>



<전략1>은 '전파산업의 세계 선도국가 도약'으로 ①전파 10대 중점기술 확보, ②전파산업진흥법(가칭) 제정을 주요 목표로 함

<전략2>는 '디지털 혁신을 위한 전파자원 공급'으로 ③6세대 이동통신 주파수 확보, ④'30년까지 위성망 100개 확보를 주요 목표로 함

<전략3>은 '공익적, 효율적인 전파이용 확산'으로 ⑤전파기반 공익서비스 제공, ⑥주파수 이용효율 평가체계 정립을 주요 목표로 함

<전략4>는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전파환경 조성'으로 ⑦전파교란 · 재난 대응역량 강화, ⑧전자파 안전성 인식을 개선을 주요 목표로 함

산업통상자원부

「AI+R&DI(기술혁신) 추진전략」 및 「산업데이터 활용 활성화 방안」 발표

- '30년까지 인공지능(AI) 적용 기술개발 600개 프로젝트 추진
- 인공지능(AI)+연구개발(R&D) 트랙 신설해 '32년까지 신규예산 100% 투자
- 산업데이터 가공 지원으로 기업의 AX 촉진
- 산업공급망데이터플랫폼 구축을 통해 산업 전반의 데이터 연계 지원

2024-10-17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제3차 산업디지털전환위원회를 개최하고 「AI + R&DI(기술혁신) 추진전략」과 「산업데이터 활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대책은 지난 9월 국가인공지능위원회에서 발표된 산업 인공지능 전환 확산 방안의 후속 조치이자, 지난 5월 「AI시대의 신산업 정책」 위원회를 출범하면서 추진하기로 한 6대 분야별 AI 활용전략 중 세 번째라고 밝힘

<AI+R&DI 추진전략>

「AI+R&DI」는 'AI를 산업현장의 기술개발(Research & Development)과 혁신(Innovation) 과정에 적용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성과를 극대화하는 기술혁신 방식'으로, 연구개발(R&D) 생산성 저하, 연구인력 부족, 기술 패권 경쟁 등 우리 산업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핵심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음

산업부의 「AI+R&DI 추진전략」은 ①AI를 적용한 기술개발을 확산하고(AI+기술개발) ②전 세계 기술·인재를 AI로 탐색하고 연결하며(AI+개방혁신) ③정부 연구개발(R&D) 기획-평가-성과관리 과정에 AI를 전면 적용하는(AI+연구행정) 등 3가지 축으로 구성되었음. 이를 통해 '30년까지 기술혁신 소요기간과 비용을 30% 이상 절감하고, 사업화 매출을 40% 확대하며, 정부 연구개발(R&D)에 참여하는 연구자의 행정부담 50% 경감을 목표로 함

첫째,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실시간 최적화 기능을 수행하는 인공지능(AI)을 연구설계와 실험수행에 적용하는 기술개발 방식을 산업 전반에 확산함. 이를 위해 '30년까지 600개 연구개발(R&D) 프로젝트를 단계별로 추진하고, '32년까지 산업부 신규 연구개발(R&D) 과제의 100%를 투입함

둘째, 전 세계에 흩어진 기술과 인재 등 혁신 자원을 AI를 통해 탐색하고 연결하는 Tech-GPT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관련 생태계도 육성함. '24.11월부터 특허 1.1억건, 논문 2.2억건 등 민간이 보유한 데이터를 대형언어모델(LLM)로 학습시켜 '25년 하반기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26년부터는 실시간으로 인재와 기업 정보를 탐색하는 기능을 도입하고, '27년부터는 글로벌 플랫폼과의 협업을 통해 기술과 인재 정보를 확충해 나갈 계획임

셋째, 정부 R&D 사업의 과제기획-선정평가-성과관리 전 과정에 AI를 전면 적용해 기업·연구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전문기관의 전문성을 보완함. 먼저, 기업·연구자들이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AI 어시스턴트를 '25년부터 단계적으로 구축함. AI가 사업계획서 초안 작성을 지원하고, 연구 데이터 관리·연구노트 기록-결과 보고서 제출까지 자동으로 생성해 제공함

< 산업데이터 활용 활성화 방안 >

산업부는 기업들이 데이터를 활용하는 과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산업 현장에서의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산업데이터 활용 활성화 방안」도 발표했음. 산업의 인공지능 전환(AX)의 기반인 산업데이터를 기업이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밝힘

먼저, 기업의 산업 데이터 활용 역량을 강화하여 AI 활용을 촉진할 방침임. 현재 많은 기업이 데이터 수집과 가공 과정에서 기술적 한계와 전문인력 부족으로 인해 충분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음. 특히, 기업이 보유한 원데이터를 AI가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로 가공하는 데이터 전처리 작업이 복잡하고 까다로워, 많은 기업이 AI 활용을 포기하는 상황임.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기업들이 AI 활용 과정에서 겪는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데이터 전처리 자동화 시스템을 지원하여 데이터 가공에 소요되는 부담을 완화할 계획임. 또한, IT 전문지식이 부족한 현장 인력도 산업 데이터를 활용해 AI를 개발하고 유지·보수할 수 있도록 사용자 친화적인 개발 시스템도 제공할 예정임

둘째, 기업 간 데이터 연계를 지원하여 공급망 최적화 및 품질관리 등의 혁신적 성과 창출을 촉진함. 디지털제품여권(DPP) 등 다가오는 글로벌 규제 대응을 위해서는 공급망 기업간 데이터 협업이 필수적이며, 경쟁력 강화를 위해 데이터 연계를 통한 생산 혁신의 필요성도 증대되고 있음. 기업들이 비밀 유출에 대한 우려 없이 적극적으로 산업데이터를 연계하기 위해서는 안전하고 공통된 규칙하에 거래할 수 있는 기반이 선제적으로 마련되어야 함. 이에, 정부는 기업이 자신의 데이터를 소유하면서, 기업간 데이터 공유와 거래가 가능한 분산형 데이터스페이스 방식의 산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지원할 예정임. 이를 통해 기업들이 글로벌 규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데이터 연계 등을 활용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할 수 있도록 관련 시범사업도 추진할 예정임

셋째, 산업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강화함. 기업이 안전하게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산업데이터 거래 절차나 원칙을 마련하고, 데이터 연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반영하여 법·제도를 보완해 나갈 예정임

국토교통부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 시범사업」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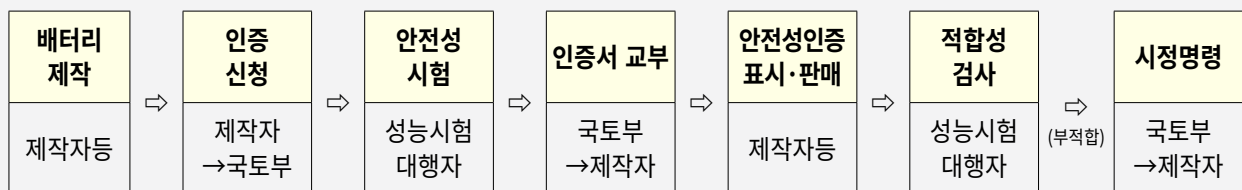
- 2025년 2월 배터리 인증제 도입 앞두고 조기 시범사업
- 10월 15일 업무협약 체결

2024-10-15

국토교통부가 이번 달부터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을 정부가 직접 인증하는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힘. 배터리 인증제는 전기차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기차에 장착되는 배터리의 안전성을 정부가 사전에 직접 시험하여 인증하는 제도로써, 「자동차관리법」 개정('23.8월)에 따라 '25년 2월 시행을 앞두고 있음

이는, 지난 '03년 제작자 스스로 자동차가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제작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판매하는 자기인증제도를 시행한 이후 20여 년 만에, 전기차의 안전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정부가 직접 전기차 배터리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체계로 전면 전환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음

<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도 절차 >



정부는 최근 전기차 안전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지난달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기차 화재 안전대책」(9.6)을 발표하였고, 주요 내용은 배터리 인증제, 배터리 정보공개, 배터리관리시스템(BMS) 안전기능 강화, 배터리 검사항목 확대 및 배터리 진단기 등 검사 인프라 확충, 배터리 이력관리제 등임. 이에 따라 이번 달부터 배터리 인증제 시범사업을 통해 배터리 인증제를 조기에 안착시켜 전기차 안전성의 핵심 요소인 배터리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임

이번 배터리 인증제 시범사업에는 업계 수요조사 결과 총 5개 업체*가 참여함

* (승용차 배터리) 현대, 기아 / (이륜차 배터리) 그린모빌리티, 대동모빌리티, LG엔솔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참여업체 간 시범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10.15)하고 본격적인 배터리 안전성 시험에 착수하며, 배터리 안전성 시험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성능시험 대행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총 12개 시험항목*에 대해 진행

* 열충격시험, 연소시험, 과열방지시험, 단락시험, 과충전시험, 과방전시험, 과전류시험, 진동시험, 기계적시험(충격시험, 압착시험), 낙하시험, 침수시험

국토교통부

「글로벌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유출 대응방안」 발표

- 특허데이터 기반 기술유출 포착, 핀셋 제도정비 등 첨단기술 유출 방지 강화
- 기술침해 피해 구제를 위한 한국형 증거수집제, 소송 관할집중 등 추진
- 기술보호 컨설팅, 아이디어 원본증명제 등 중기 기술탈취 대응책 확대

2024-10-17

특허청은 244차 대외경제장관회의(최상목 경제부총리 주재)에서 「글로벌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유출 대응방안」을 안건으로 상정·의결하였음. 앞으로 우리 기업의 생존과 더 나아가 경제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첨단기술 보호망이 한층 더 촘촘해질 전망이다

이번 방안은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의 기술유출 증가로 국가적 피해가 우려되는 국면을 극복하고,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활로를 가로막고 있는 기술탈취를 방지하는 국가 기술보호 체계를 확립하여 글로벌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역동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되었음. 동 방안에는 영업비밀 보호 및 부정경쟁 방지 제도, 특허빅데이터 분석 등의 핵심 기술보호 수단을 활용하여 기술유출 대응을 강화하는 대책들이 포함되었음

주요 내용으로는

① 특허빅데이터 기반 기술유출 포착, 핀셋 제도정비 등 첨단기술 유출 방지 강화

- 특허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기술유출을 포착하여 방첩기관에 공유하고, 즉각 수사로 연계하는 등 선제적 기술유출 방지 체계를 구축
- 특허청의 기술 전문인력을 활용한 범정부 기술유출 수사 고도화 추진
-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기술유출 수법에 맞서 다양한 행위에 대한 핀셋 대응이 가능하도록 영업비밀 보호 제도를 세밀하게 정비하는 부경법 개정 추진
- 기술유출 목적의 이직 알선 등 영업비밀 침해를 알선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민·형사적 구제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 도입 추진
- 외국 기업이 한국 자회사를 통해 영업비밀을 해외로 유출하는 등 신종 기술유출 수법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영업비밀 재유출 행위 처벌 제도 신설

② 기술침해 피해 구제를 위한 한국형 증거수집제, 소송 관할집중 등 추진

- 기술침해 소송 방식·체계의 선진화를 통해 피해구제를 강화하고, 연구인력 처우개선 등 기술유출 방지 여건 조성 중점 추진
- 증거 확보 부족으로 기술침해 소송의 승소율과 손해배상액이 현저히 낮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한국형 증거수집 제도 도입 추진
- 고도의 기술적 판단이 요구되는 기술침해 소송의 재판 전문성 제고를 위해 기술침해 사건 관할 집중 추진
- 특허심사관 채용(135명)과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 선정(고용노동부, 100여명)을 통해 기술인력의 국내 채용 적극적으로 확대

- 직무발명보상제도 적용 확대 추진하여 국내 핵심연구 인력의 해외이직 방지 여건 조성

③ 기술보호컨설팅, 아이디어 원본증명제 등 중기 기술탈취 대응책 확대

- 기업, 대학, 연구소 등 기술보유 주체의 기술유출 대응력을 제고하는 데도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
- 사전예방 차원에서 국가전략·핵심기술을 보유한 중소·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보호 컨설팅을 신규 제공(연 40개社)하고, 대학·연구소 대상으로 맞춤형 기술보호 컨설팅 신설
- 중소기업이 거래·교섭시 상대방에게 전달된 아이디어(기술정보·경영정보)를 쉽게 입증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 원본증명 제도 도입 추진
- 기존의 ‘공익변리사센터’를 ‘산업재산법률구조센터’로 확대 개편하여 영업비밀 피침해 중소기업 대상 민사소송 비용 지원, 법률 자문 제공 등을 신규 지원
- 기술탈취 분쟁의 빠른 해결을 위해 법원 및 검·경 연계 분쟁조정 확대, 의도적인 불응건의 수사연계 등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 확대 추진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내용	시행일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4-10-16 시행

데이터산업 진흥 시행계획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데이터산업 진흥 시행계획을 확정해야 하는 기한을 ‘1월 31일까지’에서 ‘3월 31일까지’로 변경하고,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문위원회의 위원 위촉권자 및 위원장 지명권자를 국무총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변경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데이터를 안전하게 분석·활용할 수 있는 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24-10-18 시행
---------	---	---------------

국내 산업구조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소재·부품의 범위에 수소, 체외 진단 시약, 이차전지 등을 추가하고, 장비 중 공기 조화장치를 가정용 및 산업용 공기 조화장치와 운송장비용 공기 조화장치로 세분화 하는 등 소재·부품·장비의 범위를 정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24-10-14 시행
-------	--------------------------------------	---------------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대혈은행 허가 요건인 시설, 장비, 인력 또는 품질관리체계 등을 갖추지 못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위반횟수별 행정처분의 가중처분이 적용되는 기간을 종전의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고, 부적격 제대혈이나 제대혈제제를 공급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15일, 2차 위반 시 업무정지 1개월, 3차 위반 시 업무정지 3개월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24-10-08 시행

의약품 판촉영업자에 대한 신고제를 도입하고, 의약품 판촉영업자와 그 종사자는 의약품의 판매질서 등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며, 의약품공급자가 의약품 판촉영업자에게 의약품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약사법」이 개정(법률 제19359호, 2023. 4.18. 공포, 2024. 10. 19. 시행)됨에 따라,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의약품 판촉영업자에 대한 교육 내용, 방법 및 교육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의약품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할 때 작성하는 위탁계약서의 내용을 정하고, 의약품 판촉영업자의 행정처분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의약품 판촉영업자 등에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의 제공 범위를 명확히 하고, 지출보고서관리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 요청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2024-10-18 시행

소비자에게 수송하기 위한 1회용 포장의 방법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는 대상에서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 **500억원 미만인 기업을 제외함으로써 포장폐기물의 발생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24-10-16 시행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 등에 대해서는 토목공사의 경우 교통시설·수자원시설·기타토목시설로, 건축공사의 경우 주거시설·비주거시설로 각각 세분화하여 입찰심사를 하거나 시공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있는바, 이에 맞추어 **건설사업자가 토목공사·건축공사에 관한 사항을 건설공사대장에 적거나 시공능력을 평가받기 위하여 건설공사 실적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도 토목공사·건축공사를 세분화하도록 하고, 종합공사의 세부공사종류에 공연집회시설, 태양광발전소·풍력발전소·조력발전소 등을 추가하며, ‘치수·치산 및 사방하천공사’를 ‘치수·하천공사’ 및 ‘치산·사방공사’로 구분하여 정하는 등 건설공사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건설사업자가 해외 건설사업 입찰에 원활히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를 영문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4-10-19 시행

일정 규모 이상의 교통시설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모빌리티 향상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로를 신설·확장 또는 개량할 때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첨단모빌리티 친화적 도로환경의 조성을 위한 설계 원칙 등을 반영하도록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첨단모빌리티 친화적 도로환경의 조성 및 확산을 위한 시범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381호, 2023. 4. 18. 공포, 2024. 10. 19. 시행)됨에 따라, 모빌리티 향상을 위한 대책 수립의 대상이 되는 사업과 각 사업별 규모 등을 정하고, 첨단모빌리티 친화적 도로환경의 조성을 위한 설계 원칙 등을 반영하지 않아도 되는 부득이한 경우를 정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첨단모빌리티 친화적 도로환경의 조성 및 확산을 위한 시범사업을 하는 경우의 고려사항을 정하는 한편, 실증특례 사업의 보험금액 기준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실증특례를 부여받은 자가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의 물적 손해에 대한 보험금액의 기준을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모빌리티 향상을 위한 대책의 수립 대상 등 (제4조의2 및 별표 1 신설)

- 모빌리티 향상을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대상 사업과 각 사업별 규모 또는 수요를 고속국도, 일반국도 및 지방도를 신설·확장 또는 개량하는 사업으로서 신설·확장 또는 개량되는 도로의 총길이가 10km 이상인 사업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함
- 모빌리티 향상을 위한 대책의 내용에는 대중교통을 통한 교통거점과의 연계 체계 구축 및 교통시설 내 혼잡 또는 응급상황 시 대응 등 모빌리티 기반시설의 접근성, 안전성 및 편의성 향상에 관한 내용 등이 포함되도록 함

② 첨단모빌리티 친화적 도로환경 조성 (제4조의3 신설)

- 첨단모빌리티 친화적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설계 원칙 등을 반영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를 첨단모빌리티의 예상 이용량이 현저히 적어 조성에 따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등으로 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첨단모빌리티 친화적 도로환경 관련 시범사업을 하는 경우 시범사업으로 인한 모빌리티 개선 효과 등을 고려하도록 함

③ 책임보험의 물적 손해에 대한 보험금액의 기준 조정 (제8조제1항제2호 단서 신설)

-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증특례를 받은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해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보험금액을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적 손해에 대한 보험금액의 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함

국토교통부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24-10-19 시행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로를 신설·확장 또는 개량하는 경우 첨단모빌리티의 이용자가 보편적이고 편리하며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설계 원칙과 기준을 반영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2023. 4. 18. 공포, 2024. 10. 19. 시행)됨에 따라, **첨단모빌리티의 이용자가 보편적이고 편리하며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설계 원칙과 기준으로 첨단모빌리티와 다른 모빌리티 수단과의 연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첨단모빌리티 이용자가 도로에 인접한 주택, 상가 등 주변 시설을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과 기준 등을 정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도로법」 상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입법(행정) 예고 법안 *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예고 법령안	의견접수기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4.10.14. ~11.25.

유료방송사업자의 채널(동 시행령에서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의 단위’에 해당함) 운용 자율성을 높이고 디지털 방송 환경에 맞는 방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운용해야 하는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의 단위 수에 관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운용해야 하는 실시간 방송프로그램 단위 수에 관한 규제 폐지 등 (제20조제2항제1호 삭제 및 같은 항 제3호 개정)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70개 이상의 실시간 방송프로그램 단위 수를 의무적으로 운용하도록 정한 규제를 폐지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실시간 프로그램 단위 수 운용에 관한 자율성을 높이고, 디지털 방송 환경에 맞는 규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제20조제2항제1호 삭제)
 - 더불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 대해 실시간 방송프로그램 단위 수가 70개 이상일 때 방송법 시행령의 지상파 계열사 채널수 제공 기준을 준용하도록 정한 사항에서도 “70개 이상 운용”에 관한 부분을 삭제하고자 함 (같은 항 제3호 개정)

※ 문의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진흥기획과](mailto:science@kict.go.kr) (전화: 044-202-6524, 팩스: 044-202-603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4.10.14. ~11.25.
-----------	----------------	------------------------

글로벌 경쟁 심화로 성장정체 등 위기를 겪고 있는 국내 유료방송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자유로운 투자와 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방송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 ①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매출액 점유율 규제 폐지 (제4조제8항 삭제)
 - 특정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매출액이 전체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총 매출액의 49%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정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매출액 점유율 규제를 폐지하여 미디어 사업자의 규모있는 성장 등을 지원하고자 함
- ②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일반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한 의무 운용 채널수 규제 폐지 (제53조제1항제2호가목 삭제)
 -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일반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해 70개 이상 채널을 의무적으로 운용하도록 정한 채널 운용 규제를 폐지하여 유료방송 사업자의 채널 운용 자율성을 높이고, 디지털 방송 환경에 맞는 규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문의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진흥기획과 \(전화: 044-202-6524, 팩스: 044-202-6038\)](tel:044-202-6524)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4.10.15.
~11.25.

감사원은 강원랜드에 대한 감사 결과(2016년 특정감사, 2022년 기관정기감사), 강원랜드에 ‘도박중독자 예방 시책 추진을 위해 카지노 출입자 관련 통계자료를 연도별로 축적·관리(2016년)’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카지노 이용자의 출입일수 관련 정보를 활용하여 도박중독자에 대해 적극적 상담·치유 대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2022년)’하도록 조치요구한 바 있음

그러나 현행 폐광지역 카지노사업자의 영업준칙에는 카지노사업자가 도박중독 예방 및 치유를 위한 적극적 대책을 수행해야 한다는 규정이 부재하여, 실효성 있는 도박중독 예방시책 추진의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이에 카지노이용자의 도박중독 예방 및 치유를 위해 이용자에 대한 교육·상담·통계관리 등을 실시해야 한다는 의무를 신설함으로써, 카지노사업자가 실효성 있는 도박중독 예방·치유 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적절한 통계관리를 수행하도록 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카지노이용자 도박중독 예방 및 치유를 위한 폐광지역 카지노사업자의 의무 신설 (안 별표10 제12호 신설)
 - 카지노이용자의 도박중독 예방 및 치유를 위해 이용자 통계관리 및 이용자에 대한 교육·상담 실시 의무 부과

※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융합관광산업과 \(전화: 044-203-2883, 팩스: 044-203-3480\)](tel:044-203-2883)

국토교통부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4.10.14.
~11.25.

부동산투자회사 시장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발표한 ‘리츠 활성화 방안(2024. 6. 17. 관계부처 합동)’의 후속조치로, 부동산투자회사의 투자대상을 확대하고, 부동산투자회사 및 자산관리회사의 보고·공시사항을 간소화하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 준법감시인의 임면을 공시토록 하는 등 부동산투자회사 시장 발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부동산투자회사의 투자대상 확대 (안 제27조제1항제9호부터 제11호까지 신설)
 -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 중 부동산으로 인정하는 범위를 수요가 높고 안정적인 수익확보가 가능한 새로운 자산까지 확대
- ② 노인복지주택의 원활한 공급 등을 위해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보증금을 부동산투자회사의 총 자산 가액 산정 대상에서 제외 (안 제27조제3항제3호)
- ③ 부동산투자회사의 행정적 부담 완화를 위해 신용평가 결과서 제출의무 삭제 (안 제29조 제3항)
- ④ 투자자 보호를 위해 준법감사인 임면을 보고사항에서 공시사항으로 전환 (안 제40조 제3항 제1호의2 신설 및 제46조 제2항 삭제)
- ⑤ 부동산투자회사의 정관변경을 변경인가(등록)사항에서 보고사항으로 전환 (안 제42조의2 제1항 및 제43조 제2항)
- ⑥ 부동산투자회사 및 자산관리회사의 주주총회 특별결의 및 경영업무 착수·완료사실에 대한 보고의무 일부 완화 (안 제43조 제2항 제7호 및 제3항 제5호 삭제)
- ⑦ 부동산투자회사 관련 업무의 추가 위탁사업 근거 마련 (안 제47조의3제1항제7호·제8호 및 제2항제1호)
 - 부동산 금융 기획·컨설팅 및 분석·평가 업무, 자문 관련 업무(한국부동산원), 자산관리회사 등의 전문인력 등록·관리 등에 관한 업무(협회)에 위탁
- ⑧ 자산관리회사 합병 시 최대주주의 결격사유를 ‘벌금형’에서 ‘5억원 이상의 벌금형’으로 합리화 (별표3 제1호마목)

※ 문의처 : 국토교통부 부동산투자제도과 (전화: 044-201-3417, 팩스: 044-201-5538)

국토교통부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2024.10.17.
~11.26.

철도지하화와 이를 통해 확보된 철도부지 개발을 통합 추진하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0177호, 2024.1.30. 공포, 2025.1.31. 시행)됨에 따라 철도부지개발사업의 범위, 철도지하화통합개발 기본계획의 내용 및 수립·변경 절차, 철도부지개발사업에 관한 특례 범위, 국유재산의 출자 방식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철도 유휴부지 및 철도부지개발사업의 범위를 특정 (안 제2조)
- ② 종합계획 변경 시 관계기관 협의 및 철도산업위원회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을 규정 (안 제3조)
- ③ 시·도지사가 기본계획 수립 시 포함해야 할 사항을 규정 (안 제4조)

- ④ 기본계획 변경 시 관계기관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 등을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을 규정 (안 제5조)
- ⑤ 기본계획 관련 의견 청취 및 확정·고시 절차 등을 신설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 ⑥ 철도부지개발사업 추진 시 적용되는 용적률, 건폐율 등 특례를 도입 (안 제9조)
- ⑦ 지방자치단체가 철도지하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하는 경우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사업에 따른 장래의 지방세 수입 증가분을 고려하도록 규정 (안 제10조)
- ⑧ 사업시행자가 철도지하화사업 완료 전 철도부지를 처분할 수 있는 요건 등을 규정 (안 제11조)
- ⑨ 철도지하화통합개발채권의 발행절차·방법 등을 신설 (안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
- ⑩ 철도부지개발사업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시·도지사가 지원할 수 있는 기반시설의 범위 등을 규정 (안 제17조)
- ⑪ 사업시행자의 거짓보고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안 제18조)

※ 문의처 :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 (전화: 044-201-4394)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4.10.16.
~11.25.

식품 등의 제조·가공 과정에서 산업재해로 인해 식품 등에 이물이 섞이거나 섞일 우려가 있는 등의 경우 식품 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는 오염 예방 조치를 취하고 지체없이 식약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19917호, 2024. 1. 2. 공포, 2025. 1. 3.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식품 등을 제조·가공하는 과정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식품 등에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섞일 우려가 있는 경우 영업자에게는 오염 예방조치를 하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대상을 구체화하는 한편,

행정 업무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부여된 오염사고 보고 및 현장조사 업무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위임하고, 오염사고 관련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안전한 식품 소비 환경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임

※ 문의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 (전화: 043-719-2014, 팩스: 043-719-2000)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4.10.16.
~11.25.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고 건강기능식품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신설하고,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에 맞춤형건강기능식품의 안전관리와 소분시설의 위생관리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를 두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914호, 2024. 1. 2. 공포, 2025. 1. 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인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의 세부 종류와 범위를 명확히 하고, 영업자가 가입할 수 있는 책임보험의 종류와 한도를 규정하여 영업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한편,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의 세부 자격기준을 보건의료인력 중 전문성이 확보된 자로 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의 범위 (안 제2조제4호)

- 맞춤형건강기능식품(위탁하여 소분·조합한 건강기능식품을 포함한다)을 판매하는 영업

②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자가 가입할 수 있는 책임보험의 종류와 한도 (안 제3조의4)

- 보험의 종류: 맞춤형건강기능식품 섭취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가 입은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사고배상책임보험
- 보상한도액 기준: 사망 1인당 1억 5천만원, 부상 1인당 3천만원, 후유장애 1인당 1억 5천만원

③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 자격기준 (안 제5조의3)

- 「의료법」제2조에 따른 의료인 중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 「약사법」제2조에 따른 약사·한약사,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영양사

※ 문의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 \(전화: 043-719-2454, 팩스: 043-719-2450\)](tel:043-719-2454)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군택의원 등 11인)	2024-10-15 발의
---------	-------------------------	---------------

현행법은 주식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민법」상 위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고, 이사는 회사를 위하여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부담함

현행법이 이사와 회사의 관계에 대해서만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사의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주주의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 이사에게 어떠한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어 왔음

최근 회사의 지배구조 재편 및 사업 추진을 위해 이루어지는 분할, 합병, 인수, 자산의 변경 등과 관련된 이사의 직무수행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향이 아니라, 회사와 일부 주주의 이익을 위하여 이루어지고 다수 주주의 이익이 침해되는 사례가 빈발하면서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음

이러한 문제는 국제무대에서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형성되는 계기로 작용하여 외국자본이 국내로 유입되는 기회들을 축소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위임관계에서 비롯되는 이사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그에 따라 직무 수행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새로이 규정하여 주주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아울러, 이사회 구성의 다양화와 ESG 경영의 확립을 위하여 대규모상장회사의 경우 이사 선임과정에서 집중투표를 의무화하고, 분리선출되는 감사위원인 이사의 수를 확대하며, 상장회사의 주주총회에 전자주주총회 방식을 도입하고,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여, 회사의 의사결정과 업무처리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안 제364조 등)

법제사법위원회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의원 등 12인)	2024-10-17 발의
---------	----------------------------	---------------

우리나라 상장회사의 주식가치는 유사 외국 상장회사의 경우에 비해 낮게 형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이러한 현상을 두고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라는 말까지 사용되고 있음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여러 방안 중 하나로, 투명한 시장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음. 자본시장의 가격기능이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를 엄단하자는 것임

이에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공소시효를 현행 10년에서 다른 범죄와 달리 30년으로 확대하여, 수사기

관이 알지 못하거나 미처 수사하지 못하여 형사처벌에 이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함으로써, 투명한 시장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안 제249조제3항 신설)

정무위원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의원 등 24인)

2024-10-14 발의

우리나라 가맹사업은 IT기술발전과 시장의 온라인 모바일화, 서비스업의 발전에 따라 양적·질적으로 급속히 성장하며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하도록 모색하고 있음.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관계는 과거의 전근대적 수직적 통제 관계에서 상호 협력하는 지원과 관리의 관계로 발전하고 있으나, 현행 법률 제2조제1호의 “가맹사업” 정의에서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에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관한 지원·교육”과 함께 “통제”를 가맹사업의 필수요건으로 하고 있음

이와 같이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관점에서 가맹점사업자를 가맹본부의 통제 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의 요건인 “통제”를 이유로 불공정거래행위를 하는 원인이 되고 있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본부의 통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이에 권위주의 시대의 유물로 현재 상황과 맞지 않는 ‘통제’ 요건을 ‘관리’로 변경하고자 함

또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는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가맹사업 거래형태가 다양하게 변화하여 위 대가를 ‘가맹금’과 같은 금전만이 아니라 가맹본부가 공급하는 물품대금에 포함된 경제적 이익 등으로도 지급하고 있음. 가맹사업 실무에서는 ‘차액가맹금’이라는 명칭으로 가맹본부가 지급하는 물품대금에 포함된 경제적 이익 등도 ‘가맹금’의 일환으로 보기도 하나, 어떤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없다는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기도 함. 과거 화폐경제 사회에서 당사자간의 거래는 주로 화폐를 매개로 이루어 졌으나 현재의 발달된 IT기술이나 플랫폼 거래에서는 화폐이외에도 모바일상품권, 포인트 적립, 마일리지 등 다양한 형태가 존재함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여 ‘가맹금’을 가맹금을 포함하여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가맹사업거래를 통해 가맹본부에게 귀속되는 ‘경제적 이익’으로 변경함 (안 제2조제1호)

정무위원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024-10-17 제출

환경적·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등록취소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영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업실적이 없다는 사유로 해당 영업자의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영업실적이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무위원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024-10-17 제출

환경적·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등록취소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영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업실적이 없다는 사유로 해당 영업자의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영업실적이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의원 등 10인)

2024-10-14 발의

현행법은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광업권과 조광권에 관한 투자나 출자를 하는 경우 해당 투자금액 또는 출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투자 또는 출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공제 제도는 광업권 및 조광권 취득만 지원하는 한계가 있어, 다양한 광업권 및 조광권 취득 시기를 고려한 해외자원개발 투자비에 대한 추가 세제 혜택과 자원안보를 위한 해외자원개발 지원이라는 취지에 맞도록 공제율 상향 조정이 필요함

또한, 투자 및 출자일로부터 5년 내 투자자산이나 출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

하지만 세액공제 반환 및 가산세 납부 규정의 획일화로 상업 생산에 이르지 못하고 반납 또는 종료되는 경우에도 일괄적으로 적용받고 있어, 사업성이 없는 경우는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업용 자산에 대한 투자를 공제 대상 투자로 포함하고, 공제율을 100분의 5(중견기업은 100분의 7, 중소기업은 100분의 10)로 상향 및 일몰기한을 2033년 12월 31일까지 7년 연장하는 한편, 사업 생산에 이르지 못하고 조광권, 광업권이 반납되는 경우 세액공제 반환 및 가산세 납부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것임 (안 제 104조의15)**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4인)

2024-10-16 발의

임대사업자로서 20년장기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임대하려는 자에게 거주자가 해당 임대주택의 부지로 활용하고자 하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하여 20년 이상 임대주택으로 운영하는 20년장기 민간임대주택의 건설을 용이하게 하고자 함 (안 제97조의9 신설)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3인)

2024-10-17 발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세대의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창출하기 위해 기업의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연장하되,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는 2024년 수출 및 기업실적 개선을 감안하여 투자여력이 제한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공제율을 상향하려는 것임 (안 제24조제1항)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의의원 등 12인)

2024-10-17 발의

간행물은 방송, 영화, 애니메이션, 음악 등 다른 콘텐츠의 원전으로 자주 활용되며 콘텐츠산업 생태계 전체의 다양성을 유지하는 원천콘텐츠의 역할을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출판업계는 콘텐츠 제작비용, 재료비, 인건비의 상승이라는 원가 상승과 성인 1인당 종합독서량 감소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방송, 영화, 애니메이션 등 영상콘텐츠의 제작비용에 대해 일정한 비율로 세액을 공제해주고 있음. 이에 간행물을 활용한 최종 결과물인 영상콘텐츠에는 제작비 세액공제가 주어지지만, 간행물에는 세액공제 혜택이 없는 것은 소극적인 콘텐츠산업 육성정책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간행물도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제공함으로써 다양하고 고품질의 콘텐츠가 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안 제25조의8 신설)

기획재정위원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2인)

2024-10-17 발의

현행법은 주식을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 일반적으로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는 시세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기업승계 과정에서 과도한 상속세 부담으로 기업인들의 경영의지가 위축되고 불확실성이 확대되어 기업의 투자 및 고용 활동이 저해되며 상속세 납부 여력이 없는 기업은 경영권, 지분 매각 등으로 기업 승계를 포기하게 되고 이는 해외 투기자본에 노출 위험을 확대시킬 우려가 있음

최대주주의 주식에 대한 할증 평가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나, 경영권 프리미엄의 크기는 경영 실적, 대외 위험도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현행 최대주주의 주식에 대해 일률적으로 20%를 할증 과세하는 것은 과세근거가 취약함

뿐만 아니라, 기업승계지원제도는 중소·중견기업 고유의 기술·경영 노하우를 다음 세대로 이전하여 국민경제의 안정적 성장과 고용 창출을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은 창업세대 고령화로 다음 세대에 기업을 승계해야 하는 중요한 전환기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은 저조한 실정임. 기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을 제한하는 현행 제도하에서는 다양한 사업체가 세대를 넘어 영속적으로 성장하는 장수기업이 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상속 및 증여시 최대주주의 주식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20%를 할증 평가하여 과세하는 현행 제도를 폐지하고, 기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업종을 모든 업종으로 인정하되 적용 제외 업종만 별도로 규정하는 현행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원활한 기업승계를 통한 장수기업 육성과 고용 안정 및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안 18조의2제1항, 제63조제3항)

기획재정위원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2인)

2024-10-17 발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위해 사용하는 국유·공유재산은 준공 후 최대 50년(요금 인하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 가능)까지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부대사업의 경우에는 사용·수익 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어 민간투자사업과의 연계성이 떨어지고 부대사업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또한 사회기반시설사업에 자산을 투자하여 발생한 수익 배분을 목적으로 하는 투융자집합투자기구는 그 운용방식 및 범위 등이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다양한 자금 유입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한편, 현행법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투융자집합투자구에 대해 기획재정부에 설정·설립 통보를 하도록 되어있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이 아닌 ‘보고’를 통해 투융자

집합투자기구를 설정·설립하는 사모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설정·설립에 관한 통보가 이루어지지 않아, 등록이 아닌 ‘보고’를 하는 경우에도 기획재정부에 설정·설립을 통보하도록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주요 내용으로는

① 부대사업의 국유·공유재산 사용·수익 기간 연장 (안 제21조의2제2항 신설)

-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된 사회기반시설사업의 기간에 맞춰 부대사업 관련 국유·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기간을 연장함

②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운용방식 및 범위 확대 (안 제41조의5제1항, 제43조제1항, 제44조제1항)

-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차입비율 완화, 자산운용 범위 확대, 존속기간 설정의무 배제 등을 통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다양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③ 사모 투융자집합투자기구 설정·설립에 따른 통보 의무 근거 마련 (안 제41조의6제1항)

- 설정·설립 이후 등록이 아닌 보고를 하는 사모 투융자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보고 서류 등을 기획재정부에 송부하도록 하여 사모 투융자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통보 의무를 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위원회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등 10인)

2024-10-17 발의

현행법은 세법의 질문·조사권 규정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그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자에게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의 과태료 부과 한도가 낮고 반복 부과도 어려워 기업들의 자료제출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에 충분하지 못하며, 실제로 외국에 본사가 소재한 다국적 기업 등 일부 기업이 세무공무원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담하고 수백에서 수천억원에 달하는 과세를 회피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실효성 있는 협력의무 이행 확보방안으로, 납세자가 세법의 질문·조사권 규정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 또는 기피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국세청장이 세무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을 거부·기피하거나 제출명령에도 불구하고 장부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 기한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일당 평균수입금액의 1천분의 3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다만, 평균수입금액을 사용함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1일당 1천만원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안 제85조의7제1항)

② 국세청장이 장부등의 재제출명령 이행을 위한 노력과 불이행의 정도·사유 또는 결과 등을 고려하여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함 (안 제85조의7제2항)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0인)

2024-10-18 발의

현행법은 내국인의 연구·인력개발비 및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면서 반도체 기술을 포함한 국가전략기술과 관련한 투자에 대해서는 보다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신규 공정 개발을 위한 대규모 자본 투입이 필요한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대기업은 선단 공정의 리더십 확보를 위한 투자에 집중하고, 중소기업은 범용 반도체 중심으로 투자하고 있는데, 범용 반도체 관련 설비투자는 현행법상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되지 않아 반도체 산업 관련 중소기업의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미흡한 실정임. 따라서, 반도체 산업의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육성이 중요하므로 이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중소기업의 반도체 중고설비 투자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범용 반도체 관련 투자에 대하여 2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한편, 국가전략기술사업의 일몰기한과 세액공제액 이월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임 (안 제24조 및 제144조)

기획재정위원회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6인)

2024-10-18 발의

가상자산 거래 시장의 급속한 성장에 따라 국외로 이전되는 가상자산금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2023년에 신고된 해외거래소로의 가상자산 이전액은 약 45조원에 이르고 있어, 가상자산의 익명성, 보안성 등의 특성을 악용한 저가 수입신고 및 고가 수출신고 등 부정무역 행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그러나 관세청은 가상자산의 거래와 관련된 정보의 입수에 실질적인 제한이 있어 가상자산을 악용한 위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기관에 가상자산 거래소를 추가하고, 가상자산 거래소로 하여금 국외로 이전되는 가상자산 내역을 과세자료로서 제출하도록 하여 관세청이 가상자산을 악용한 부정무역 및 체납자의 재산 은닉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관세청장이 관세의 부과·징수 및 통관에 관계되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과세자료제출기관에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함 (안 제264조의2제7호 신설)
- ②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제출하여야 하는 과세자료에 가상자산사업자가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해외거래소로의 전신송금 정보를 추가함 (안 제264조의3제1항제7호 신설)

기획재정위원회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6인)

2024-10-18 발의

현행법은 과세정보의 획득과 적발이 어려워 탈세가능성이 높은 역외탈세 신고의무 미이행자에 대해 일반 신고불성실가산세율보다 높은 100분의 60을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과세자료수집이 사실상 불가능한 해외 가상자산 증여거래를 통한 부정한 부의 세습이 빈번히 이뤄지고 있지만, 그 처벌수위는 증여세액의 40%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

이에, 가상자산을 국내 가상자산사업자가 운영하는 거래소를 통해 증여받지 아니하고, 해외거래소 또는 개인간거래(P2P거래)를 이용하여 증여를 받는 경우, 역외탈세 신고 미행자와 동일하게 처벌수위를 높여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고자 함 (안 제47조의2)

기획재정위원회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의원 등 15인)

2024-10-18 발의

현행법은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항공기를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과 원재료 중 지정된 물품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관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면서 매해 단계적으로 감면율을 축소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 특례를 적용하는 일몰규정을 두고 있음

해당 규정은 주요국과의 FTA 체결·확대로 인해 감면제도의 실효성이 감소할 것이라는 점을 이유로 2012년부터 일몰조항으로 변경된 것인데, FTA를 통하여 관세를 실제로 면제받는 비율은 해외 부품업체로부터 원산지증명을 확보하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낮은 수준에 그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관세감면제도가 폐지된다면 국내 항공산업의 국제경쟁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최근 우리나라도 항공기 부분품의 교역 자유화를 위하여 국제협정(WTO 민간항공기 교역에 관한 협정) 가입 방안에 대해 관계부처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관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 일몰기한 역시 2033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려는 것임 (안 제89조제6항제1호)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024-10-16 제출

환경적·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폐업명령 등의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사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부가통신사업을 신고 또는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휴업하였다는 사유로 해당 사업의 폐업 등을 명하거나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휴업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1인)

2024-10-16 발의

현행법은 「항공사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자가 항공운송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율에서 1천분의 12를 경감하여 과세하고, 해당 항공기 취득일 이후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면서 자산총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자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만 재산세 경감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항공운송사업은 국가 전략산업의 기반이 되는 핵심 기간산업으로서 고용창출효과 등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미국이나 중국 등 세계 주요 경쟁국은 사업용 항공기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을 고려할 때 해외 주요 항공사와 경쟁하고 있는 국내 항공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방세 감면 혜택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항공운송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항공기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한과, 자산 총액 일정 이상의 재산세 경감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65조)

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의원 등 12인)

2024-10-18 발의

현행법은 산업단지 등에 입주하는 기업이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산업용 건축물 등을 취득·보유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50, 재산세의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은 100분의 75)를 감면함. 반면,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산업단지 등을 개발·조성한 후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취득·보유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35, 재산세의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은 100분의 60)의 감면율을 적용함

그런데 이 경우 사업시행자가 입주기업과 마찬가지로 직접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라는 이유로 입주기업보다 낮은 감면율을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부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이에 사업시행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등에서 부동산을 취득·보유하는 경우 입주기업과 동일 수준의 감면율을 적용하려는 것임 (안 제78조제3항제1호)

문화체육관광
위원회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의원 등 15인)

2024-10-16 발의

디자인보호법은 디자인출원에 대하여 모든 등록요건을 심사하여 디자인권을 부여하는 심사주의 원칙이나, 패션·잡화 등 유행에 민감한 일부 물품군에 대해 신규성과 선출원 등 일부 요건에 대해서는 심사없이 신속하게 권리를 부여하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최근 온라인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디자인일부심사등록제도를 악용하여 이미 공지되거나 공용이 된 디자인권을 새로운 것처럼 등록해 온라인상에서 물품을 독점 판매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음

이에,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에 대해 명백하게 신규성과 선출원을 위반한 경우는 심사관이 거절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제3자 권리보호를 위해 디자인일부심사등록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기존 공고일 이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에서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연장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디자인일부심사제도 운영을 하기 위함임 (안 제62조제5항 신설 및 제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다만, 디자인권자의 법적 안정성과 제3자의 권리보호 간 이익균형 도모를 위하여 이의신청기간은 등록공고일 이후 1년 내에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신설)

이와 더불어, 디자인등록출원서 기재사항 중 관용적으로 기재되어 사실상 무의미한 ‘디자인 창작내용의 요점’의 기재란을 삭제하여 출원서 작성을 간소화함으로써 출원인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 (안 제37조제2항 및 제181조제3항)

문화체육관광
위원회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3인)

2024-10-17 발의

관광 분야에서 저출생 문제 해결의 일환으로, 다자녀 가구의 여행 및 관광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최근 우리나라 저출생 현상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자녀 가구에 대해 주거·양육·교육 지원 및 세금 감면 등 다각도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음

현실은 자녀를 3명 이상 키우면 혜택은커녕 불편한 점이 더 많음. 대부분 숙박시설은 5인 가족 예약 시 객실 2개를 예약해야 함. 호텔 등 숙박업소 내부규정에 따라 제각각 운영하는 탓임. 숙박 및 관광시설 이용에도 다자녀 가구 특성을 고려해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다자녀 가구의 여행 및 관광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다자녀 가구에 대한 일상 속 정책 지원을 통해 저출생 문제 해결에 일조하기 위한 것임 (안 제47조의3)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024-10-16 제출

환경적·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등록취소 등의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사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자의 사업 수행 실적이 1년 이상 없다는 사유로 해당 사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사업정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수행 실적이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정부)

2024-10-16 제출

환경적·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지정취소 등의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사업시행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후 1년 이내에 해당 개발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를 변경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개발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024-10-16 제출

환경적·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지정취소 등의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사업시행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후 1년 이내에 해당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를 변경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관의원 등 12인)

2024-10-16 발의

현행법은 원재료 가격 상승에 대한 수탁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하여,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납품대금 연동의 대상에 에너지, 신·재생에너지 및 도시가스(이하 “주요 에너지”라 함) 등은 포함되지 않아, 주요 에너지의 가격이나 요금이 급등하는 경우 수탁기업이 그 상승분을 온전히 부담해 경영악화를 초래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주요 에너지의 요금 또는 비용이 납품대금의 일정 비율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도록 함으로써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수탁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안 제2조제12호의2 신설 및 같은 조 제13호, 제21조제1항제4호)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2인)

2024-10-17 발의

국가핵심기술 및 산업기술 국외유출 범죄 처벌을 강화하고자 함. 아울러, 국가핵심기술 및 첨단기술 보유 기관 근무자의 외국기업 취업을 제한하고, 산업기술침해행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려 함

최근 기술패권 경쟁 심화로 산업기술 유출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최근 6년간(‘17~’23) 산업기술 해외유출 적발 건수는 총 140건임. 그 피해규모는 33조원에 달함. 해외 각국은 처벌 강화 추세인데, 우리나라 처벌 형량은 지나치게 낮아 국내 산업계도 엄정 대처를 요구하는 상황임

이에,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으로 유출하는 경우, 기존 3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5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15억 이하의 벌금에서 20억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자 함. 마찬가지로, 산업기술을 외국으로 유출하는 경우도 기존 15년 이하의 징역에서 20년 이하의 징역으로, 15억 이하의 벌금에서 20억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음. 아울러, ‘고의’로 기술 유출했더라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을 입증해야만 처벌할 수 있는 문제점도 해소하고자 함. 해외유출 처벌요건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음. 또한, 외국기업 취업을 일정기간 제한하고, 산업기술 해외유출자의 신상정보 공개도 포함함. 국내 산업기술 보호 강화로 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국가핵심기술 등을 보유한 대상기관에 3년 이상 근무한 자는 퇴직일부터 3년간 유사한 업종의 외국기업 등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함 (안 제34조의2 신설)

- ②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해당 위반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유기징역을 상향하고 15억원 이하에서 20억원 이하로 벌금을 상향하여 병과하며,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해당 위반 행위를 한 자는 15년 이하에서 20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하고 15억원 이하에서 20억원 이하로 벌금을 상향하여 처벌을 강화함 (안 제36조제1항 및 제2항)
- ③ 법원은 산업기술 해외유출자의 신상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15년 동안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6조의3 신설)

보건복지위원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의원 등 10인)

2024-10-14 발의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초로 마약류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하여 대마를 포함한 마약류 성분이 대거 검출된 바 있음

작년 6월 현행법이 개정되어 직접구매 해외식품에 대한 검사, 실태조사 등에 대한 근거조항이 마련되었으나 의무조항이 아닌 임의조항임

이에 직접구매 해외식품 중 마약류 원료·성분이 포함되거나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연 1회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에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게시하고, 마약류 원료·성분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마약류 원료·성분이 포함되거나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직접구매 해외식품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자 함 (안 제25조의2, 제25조의4, 안 제25조의5)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의원 등 12인)

2024-10-14 발의

지난 6월 24일 1차 리튬전지를 제조하는 (주)아리셀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로 근로자 23명이 사망하는 대형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음. 해당 사업장은 '21년 2월부터 '24년 2월까지 3년간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으로 지정되어 산재보험료 감면 혜택을 받았음. 이 사고를 계기로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으로 지정되었더라도 인정기간 중에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이미 감면받았던 산재보험료를 환수 조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음. 정부도 「외국인근로자 및 소규모 사업장 안전강화 대책」(8.13)에서 위험성평가 인정사업 개편과 함께 인정기간 중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산재보험료 감면액 환수를 추진한다고 발표한 바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사업주가 산재예방을 위해 재해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이를 인정받으면 산재보험요율을

감면해주는 산재예방요율제를 규정하면서, 감면된 보험료를 환수하는 기준으로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만 규정하고 있음

이에 (주)아리셀과 같이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을 받았으나 사실상 형식적인 재해예방활동을 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 이미 감면된 산재보험료를 재산정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주가 실질적으로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재해예방활동을 하도록 유인하고자 함 (안 제15조)**

환경노동위원회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0인)

2024-10-15 발의

불법폐기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할 때마다 계량값, 위치정보, 영상정보 등의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도록 하고 있으며,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를 입력하지 아니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을 수 있음

현행 폐기물관리법에서는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를 기간 내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입력하는 등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그 처분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하여 과도한 형벌규정이 적용됨으로써 폐기물처리업의 정상적 수행에 어려움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이에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를 기간 내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입력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형벌 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안 제68조제3항)

환경노동위원회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0인)

2024-10-15 발의

현행법은 하천구역 내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 등으로 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댐 등 하천시설의 관리규정을 정하는 때에 하천관리청의 승인을 얻어야 하나 승인 없이 하천시설의 운영을 개시한 자, 댐 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적절한 관리를 위해 일정한 자격을 가진 관리기술자를 두어야 하나 그러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천법이 의무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할 위험성을 고려할 때 형벌은 유지될 필요가 있어 보이나, 위반 행위자에게 행정명령 후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형벌을 부과하여도 행정목적 달성할 수 있음에도 곧바로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형벌이 과도한 측면이 있음

이에 원상복구, 이행 등의 조치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고 이를 따르지 않은 경우에 형벌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형벌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안 제69조, 제95조, 제96조)

환경노동위원회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등 13인)

2024-10-15 발의

정부는 현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에 따라 기후위기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및 위험 등을 조사하기 위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기후변화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그러나 생물종, 서식지 등의 생태계-기후변화 정보를 생산하는 담당 기관과 관리시스템이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어 정책 활용에 한계가 있음

이에 산재된 생태계-기후변화 정보를 일원화하기 위해 **범부처 차원의 생태계 기후대응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수립하는 데 지원하고자 함**. 또한, 생태계 기후대응 통합정보관리시스템 운영 시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의 반응 및 변화를 분석·예측하기 위해 **자동관측 기반의 국가 표준 생태정보를 수집하는 표준관측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1조의2 및 제11조의 3 신설)**

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의원 등 14인)

2024-10-15 발의

「대한민국 헌법」 제32조는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음.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11조는 법의 적용 범위를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한정하고 4명 이하를 사용하는 사업과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에 따라 일부 규정만 적용하도록 해 일하는 모든 국민들이 헌법상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 적용을 확대할 것을 권고한 바 있으며, 「최저임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고 있는 변화에 비추어서도 「근로기준법」적용에 예외를 두는 것은 그 정당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음. 특히,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노동조합 조직률이 낮아 법에 따른 국가적 보호 필요성은 더욱 높다 할 것임

그러나 모든 근로자에게 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당위성만을 가지고 법을 개정할 경우, 이를 준수할 여력이 되지 않는 영세 자영업자 등의 부담만을 가중시켜 법의 취지와 달리 범법자를 양산하고, 고용과 임금에도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주게 될 것이므로 이를 고려해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지원 등 세심한 정책적 고려가 함께 요구됨

이에, 「근로기준법」을 모든 사업장과 사업에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안 제11조제1항),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일부 규정을 단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법 준수에 필요한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근로기준법」의 입법취지를 구현하면서도 전면 적용 확대에 따른 혼란과 부담을 최소화해 제도의 안정적인 시행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1조제2항)

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5인)

2024-10-16 발의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은 ILO와 UN의 협약을 통해 세계 보편적인 노동원칙으로 채택되어 있으며, 많은 국가들은 이에 따른 평등대우원칙을 법과 제도에 구현하여 실행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성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만 규정되어 있어 고용형태, 학력, 연령, 신체조건 등을 이유로 이루어지는 차별적 처우를 방지하고, 바로잡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균등한 처우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동일 가치 노동의 판단 기준과 정의를 근로기준법에 명확히 규정하여** 제시함으로써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6조의2 신설 등)

환경노동위원회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024-10-16 제출

환경적·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등록취소 등의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제조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을 한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실적이 없다는 사유로 해당 제조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실적이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환경노동위원회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024-10-16 제출

환경적·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승인취소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영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의 승인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건설폐기물이 반입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건설폐기물이 반입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임시보관장소 승인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폐기물이 반입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환경노동위원회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 등 10인)**

2024-10-16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구직자 채용 시 거짓 채용광고, 정당한 사유 없는 채용광고 변경, 채용 후 근로조건 변경 등의 행위를 금하고, 채용일정 및 채용과정을 고지하는 등 채용절차에서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고 있음

그러나 채용 시 임금, 근로시간, 복리후생 등 구직자의 구직 여부 결정에 필요한 근로조건은 고지 의무가 없고, 직업을 가지려는 구직자의 특성상 채용 전 위와 같은 근로조건을 구인자에게 요청하기 어려워 채용과정에서 구직자의 객관적인 판단이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채용과정에서 일자리의 근로조건을 공개하도록 하여 구직자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채용절차상 공정성을 향상시키고자 함 (안 제8조)**

환경노동위원회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4인)

2024-10-17 발의

현행 제도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최대한 억제하고, 이를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사업장 폐기물의 종류와 발생량 등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의류 기업들이 사용되지 않은 재고 의류를 몰래 소각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음에도 그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임

소각되는 재고 의류는 원칙적으로 폐의류로 분류되어야 하지만, 일부 기업들은 소재별 코드로 의류를 배출해 재고 처리 과정을 숨기고, 다른 플라스틱 쓰레기와 함께 처리함으로써 실제 소각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게 하고 있음

사용되지 않은 재고 의류의 폐기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고, 자원 낭비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 이에 **판매되지 않거나 판매를 포기하여 폐기하기로 결정된 제품을 사업장 재고폐기물로 정의하고, 이러한 사업장 재고폐기물의 종류와 발생량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자 함 (제2조제3호의2 신설 및 제17조제2항)**

환경노동위원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4인)

2024-10-17 발의

우리나라는 생산자에게 재활용 의무를 직접 부여하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시행하고 있음. 이 제도는 제품 생산자 또는 포장재를 사용하는 생산자에게 일정량의 재활용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과금을 부담하도록 해 사용 후 배출되는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는 제도적 근거가 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의류는 EPR 제도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재고 의류의 처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음. 기업들은 브랜드 가치 보호를 이유로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은 멸정한 의류를 소각 처리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제품 생산에 사용된 에너지와 자원의 낭비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윤리적인 문제로도 대두되고 있음. 이러한 소각 행위는 자원 순환과 환경 보호 측면에서 매우 부적절하며, 의류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음

유럽연합(EU)은 섬유업계의 지속가능성과 순환경제를 제고하기 위한 전략에 따라 ERP 제도에 의류산업을 적용시켜 의류 폐기물 감축과 재사용 및 재활용의 책임을 부여하겠다고 발표했음. 이에 우리나라도 **의류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대상 품목으로 추가하여, 의류 생산자에게 재활용 의무를 부과하고, 무분별한 의류 소각을 방지하고자 함 (제16조제1항 개정)**

환경노동위원회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4인)

2024-10-17 발의

옷을 쉽게 사고 쉽게 버리는 패스트 패션(SPA) 업체의 성장 등은 패션 산업의 발전의 동력이 되기도 했지만, 그 이면에는 폐의류의 급증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동반하고 있음. 생산과 소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의류뿐 아니라,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은 의류 재고품 역시 상당량에 달하며, 많은 기업들이 브랜드 가치 훼손을 우려해 이를 몰래 소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러한 재고 의류의 소각은 제품 생산에 투입된 에너지와 자원의 낭비일 뿐만 아니라,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있음

새 옷을 바로 소각 처리하는 것은 자원 순환과 환경 보호의 측면 뿐 아니라, 의류 산업의 지속 가능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음. 유럽연합(EU)은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여 판매되지 않은 직물 및 신발 재고의 폐기를 금지하는 제도를 2026년부터 시행할 예정임. 우리나라도 순환자원 경제 사회의 실현을 위해 사업자가 의류재고품을 폐기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의류 재고품을 순환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의류재고품의 폐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여 의류 기업이 재고품을 기부하거나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의류를 제품등 순환이용 촉진 대상 품목에 추가하고자 함 (안 제6조제4항 신설 및 안 제17조 개정)**

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1인)

2024-10-17 발의

현행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또는 피해자에게 사용자가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나, 권리구제를 위한 시정신청 등 적극적인 구제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에게 사용자가 불리한 처우를 하거나,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해당 근로자로 하여금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안 제76조의4, 제76조의5 등)

국토교통위원회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19인)

2024-10-15 발의

최근 택시운수종사자 감소에 따른 택시공급 부족으로 인해 택시의 공공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택시부제를 전면 해제하는 등의 정책이 추진된 바 있으나 실질적인 개선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지속적·안정적인 택시공급을 위해서는 택시운송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운수종사자단체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재정적 지원은 의무사항이 아니고 택시는 대중교통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책 마련에 소극적인 상황임

이에 현행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고 있는 택시 관련 지원사항 등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을 유도하는 한편, 지속적인 택시운송사업 발전의 법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안 제7조제1항제4호의3부터 제4호의7까지 신설 등)

국토교통위원회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7인)

2024-10-15 발의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접수된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3개 배달업체에서 1,708건의 산재신청이 있었는데, 질병 9건을 제외한 1,699건이 사고였음

산재신청 현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라이더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일상적으로 위협 받고 있는 상황임에도, 배달업체에서는 라이더의 유상운송보험 가입이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확인하지 않고 있음

이에 라이더의 유상운송보험 가입과 교통안전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배달업체가 운전면허 미보유자·유상운송보험 미가입자·교통안전 교육 미이수자와 운송위탁계약 또는 근로계약 등을 체결할 경우,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인증을 취소하도록 하며, 유상운송보험의 가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19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신설, 제19조의5·제19조의6 신설 및 제51조제1항제9호의4 신설 등)

국토교통위원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의원 등 10인)

2024-10-16 발의

택시나 버스 등에서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폭행 사건이 빈발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운전자와 승객을 분리하는 보호벽 등 안전시설 설치를 유도하거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가 없음. 다만, 국토교통부령에 근거하여 시내버스 등에 한하여 칸막이벽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택시는 버스보다 공간이 협소한 만큼 각종 범죄나 전염병 에 좀 더 취약할 수밖에 없어 운전자와 승객을 분리하는 칸막이벽시설이 더 크게 요구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 자동차에 칸막이벽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도록 하고, 칸막이벽시설을 설치·개선하는 경우 재정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운수종사자 및 승객의 건강과 안전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52조의2 신설 등)

국토교통위원회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박홍근의원 등 10인)

2024-10-17 발의

흔히 빌라로 불리는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은 아파트보다 저렴하고 착공부터 준공까지 건축 기간이 짧아 서민 주거의 한 축을 담당해 왔음. 그러나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를 겪으며 서민의 거처를 늘리기 위한 수단으로 불법 개조가 다수 활용되었고, 이후에는 현실에 맞지 않는 일조권 사선 제한이 오히려 안전에 취약한 불법건축물을 확산시키는 부작용을 낳았음

거주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방 쪼개기가 점점 많아지면서 정부와 국회는 2019년 4월 23일 「건축법」을 개정하여 불법 증축 유발의 주원인이었던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 제한 규정을

삭제해 이행강제금의 실효성을 높였고 부당 이득을 목적으로 한 건물주의 준공 이후 불법 개조를 상당 부분 차단할 수 있게 되었음

다만, 이 과정에서 생계형이거나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불법건축물의 소유자도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평생 이행강제금을 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어 경제적 타격이 상당한 상황임. 현장에는 불법건축물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사거나 임대차 계약을 맺은 선의의 피해자도 다수 존재함

이에 2019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특정건축물 중 인근 주민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고 안전상 문제가 없는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특정건축물에 대해 한시적으로 합법적으로 허가 및 신고, 사용승인 및 용도변경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다시 부여하고자 함. 이러한 조치는 역대 정부와 마찬가지로 자발적인 시정이 어려운 도시 서민을 보호하는 조치이며 또한 더이상 시장에 불법행위가 남발되지 않도록 최종적인 양성화를 목적으로 하며, 비아파트 주택 공급의 활성화로 궁극적으로 주거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특정건축물을 선별하여 사용을 승인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특정건축물의 최종적인 양성화를 목적으로 함 (안 제1조)
- ② 이 법은 2019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특정건축물 중 세대당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다세대 주택 등의 소규모 주거용 특정건축물에 적용함 (안 제3조)
-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된 특정건축물이 구조안전·위생·방화에 지장이 없고 이행강제금의 체납이 없는 등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함 (안 제5조)
- ④ 시정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구조안전 또는 위생상의 사유를 입증하고 인근 주민의 일조권(日照權)·조망권(眺望權)의 침해 우려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수인할 수 있을 범위의 건축물일 것을 요건으로 함 (안 제5조 제2호 및 제3호)
- ⑤ 과태료와 「건축법」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체납이 없을 것. 다만,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는 이행강제금 5회분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모두 납부하는 조건으로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도록 함 (안 제5조제5호)
- ⑥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에게 사용승인 이후 건축 관계 법령의 준수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약속하는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함 (안 제7조)
- ⑦ 이 법의 유효기간은 시행일부터 1년간 효력을 가짐 (안 부칙 제2조)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1. 국정감사 일정

일자	위원회	대상기관	장소·시간
10. 21.(월) 9개 위원회	법사위	대검찰청	국회 10:00
	정무위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기재위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등 6개 기관	
	과방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방위	[현장시찰] 대한항공 항공우주사업본부테크센터	부산 10:00
		[현장시찰] 해군작전사령부	부산 13:00
	행안위	<지방1반> 전라남도	전라남도청 10:00
		전라남도경찰청	전라남도경찰청 도청감사 종료후
		<지방2반>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청 10:00
		울산경찰청	울산경찰청 시청감사 종료후
	농해수위	[현장시찰] 고수온피해지역	여수 09:00
		해양경찰청, 부산항만공사 등 11개 기관	해양경찰교육원 11:00
	복지위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등 7개 기관	국회 10:00
	국토위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	
10. 22.(화) 11개 위원회	법사위	서울고법, 수원고법 등 17개 기관	국회 10:00
	정무위	국가보훈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 4개 기관	
	교육위	인천광역시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일자	위원회	대상기관	장소·시간
	과방위	[현장시찰] 우주항공청및KAI,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사천 창원
	국방위	육군제2작전사령부	대구 10:00
	행안위	<지방1반>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청 10:00
		광주경찰청	광주경찰청 시청감사 종료후
		<지방2반>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청 10:00
		부산경찰청	부산경찰청 시청감사 종료후
	문체위	대한체육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등 6개 기관	국회 10:00
	농해수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 6개 기관	
	산자중기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등 11개 기관	
	환노위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12개 기관	
	국토위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4개 기관	인천국제공항공사 10:00
10. 23.(수) 3개 위원회	기재위	<제1반> 부산지방국세청, 부산.경남지방조달청 등 8개 기관	부산지방국세청 10:00
		[현장시찰] 부산신항	부산신항 15:00
		<제2반> [현장시찰] 평택항	평택항 10:00
		대전지방국세청, 전북지방조달청 등 5개 기관	한국은행전북본부 16:00
	행안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청 10:00
		제주경찰청	제주도청 도청감사 종료후
	복지위	<종합감사> 보건복지부 등 3개 기관(감사대상기관 전체)	국회 10:00

일자	위원회	대상기관	장소·시간
10. 24.(목) 12개 위원회	법사위	[현장시찰] 안양교도소	안양교도소 10:00
		감사원	감사원 15:00
	정무위	<종합감사 - 금융>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회 10:00
	기재위	<제1반> 대구지방국세청, 대구지방조달청 등 6개 기관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10:00
		<제2반> 광주지방국세청, 광주지방조달청 6개 기관	광주지방국세청 10:00
	교육위	<종합감사>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등 감사대상기관	국회 10:00
	과방위	<종합감사>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감사대상기관 전체	
	외통위	<종합감사> 외교부, 통일부 등 10개 기관(소속기관 포함)	
	국방위	<종합감사> 국방부 등 5개 기관	
	문체위	<종합감사> 문화체육관광부, 국가유산청 등 소속 공공, 유관기관	
	농해수위	<종합감사>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관기관	
	산자중기위	<종합감사> 산업통상자원부	
	환노위	<종합감사> 환경부, 기상청	
	국토위	<종합감사>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10. 25.(금) 7개 위원회	법사위	<종합감사> 법무부, 법제처 등 7개 기관	국회 10:00
	정무위	<종합감사 - 비금융> 국가보훈부, 국무조정실 등 6개 기관	
	과방위	<종합감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우주항공청 (소관 감사대상기관 전체)	
	행안위	<종합감사> 행정안전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6개 기관	
	농해수위	<종합감사> 해양수산부 및 소관기관	
	산자중기위	<종합감사>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환노위	<종합감사> 고용노동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토론회 및 세미나	10/21(월) 14:00	국가교육위원회 혁신을 위한 긴급 토론회	고민정·김영호 의 원실 등	의원회관 4간담회의실
	10/22(화) 10:00	노후산단 활성화를 위한 정책 세미나	구자근 의원실	의원회관 1세미나실
	10/22(화) 10:00	MZ세대가 생각하는 국가 미래를 위한 연금개혁 방향은?	박수영 의원실 등	의원회관 1간담회의실
	10/22(화) 14:00	중증환자 중심의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올바른 해법은?	전진숙 의원실 등	의원회관 3세미나실
	10/22(화) 15:00	AI 시대의 교육 : 변화의 과제들	이인선 의원실 등	국회도서관 강당
	10/22(화) 15:00	[공공기관 운영 민주화를 위한 공운법 개정 촉구 국회토론회 1차] 공공기관 단체교섭권 침해수단으로 악용되는 총인건비 제의 실체	박홍배 의원실 등	의원회관 2세미나실
	10/23(수) 14:00	대한민국 OTT 산업 10년(decade)의 조망과 2025년 OTT 시장 전망	김우영 의원실	의원회관 7간담회의실
	10/24(목) 14:00	석탄발전소 폐쇄 부지의 활용과 정의로운 전환 연구 발표회	여기구 의원실 등	의원회관 3세미나실
자료집 등	10/21(월)	「THE 현안」 제30호(2024-30호) 발간	국회도서관	
	10/22(화)	「최신외국입법정보」 제258호(2024-20호) 발간		
	10/23(수)	「금주의 서평」 제700호 발간 - 도서명 : 음모론이란 무엇인가 - 저자 : 마이클 셔머		
	10/23(수)	「Data&Law」 2024-11호 발간		
	10/14(월)	「NABO 경제동향」 제45호 발간	국회예산정책처	

※ 위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들은 추후 제공 예정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256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자료집 등	10/14(월)	「이달의 입법민원」(2024.9월호)	국회사무처	
	10/15(화)	「최신외국입법정보」 제257호(2024-19호)	국회도서관	
	10/16(수)	「금주의 서평」 제699호 - 도서명 : ‘나’라는 착각 - 저자 : 그레고리 번스		
	10/18(금)	「현안, 외국에선?」 제92호 - 일본 의사의 ‘일하는 방식 개혁’ 본격 추진		
	10/14(월)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111호	국회미래연구원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10.14~10.20)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시	분야	내용
10/15(화)	소비재·유통업	소비재 · 유통업 뉴스레터 2024_Vol.2
10/16(수)	금융	보험금청구권 신탁이 곧 허용됩니다
10/17(목)	중국	문이 열려도 문턱은 살피야 한다
10/18(금)	금융	은행 및 금융지주 금융규제 주간 브리핑 - Vol.6 (2024년 10월 3째주)

입법전략자문그룹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그룹(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Group)은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와 함께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실무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관 및 규제대응업무 전문팀입니다. 다양한 네트워크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춤형 Total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에 대해 “법률 제·개정 사항과 동향 파악,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문서의 내용(인쇄본 또는 전자문서) 및 이를 이용하여 편집한 내용은 제3자에게 공유하실 수 없으며,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유) 세종과 미리 상의하여 동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백대용 | 변호사

[프로필보기](#)



장대섭 | 고문

[프로필보기](#)



김광재 | 변호사

[프로필보기](#)



김성범 | 변호사

[프로필보기](#)



안현정 | 변호사

[프로필보기](#)



방세희 | 변호사

[프로필보기](#)



성재열 | 변호사

[프로필보기](#)



조성환 | 변호사

[프로필보기](#)

SHIN&KIM

법무법인(유) 세종